

서울특별시 교육·학예에 관한 조례 일본식 표현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관련 2758
----------	------------

제안연월일 : 2021년 12월 17일
제안자 : 교육위원장

I. 수정이유

- 안 제8조는 「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의 개정 사항으로 제6조제2항제4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정비하여 쉬운 우리말로 순화하도록 하고 있음.
- 그러나 동 조례안 제8조 「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는 지난 2021년 9월 30일 「서울특별시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로 개정되면서 제6조제2항제4호의 해당 조문도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따라 이미 정비가 되어있어 삭제가 필요함.

II. 주요내용

- 안 제8조를 삭제함.

III. 참고사항 : 없음.

서울특별시 교육·학예에 관한 조례 일본식 표현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교육·학예에 관한 조례 일본식 표현 일괄정비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8조를 삭제하고,

안 제9조부터 제13조까지를 제8조부터 제12조까지로 한다.

수정안 대비표

원안	수정안
<p>제8조(「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 <u>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</u>」의 개정) 서울 <u>특별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 치 및 운용 조례</u>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 정한다. <u>제6조제2항제4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</u> <u>로 한다.</u></p> <p><u>제9조~제13조</u> (생략)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<삭제></u></p> <p><u>제8조~제12조</u> (조례안과 같음)</p>

서울특별시 교육·학예에 관한 조례 일본식 표현 일괄정비 조례안

제1조(「서울특별시 교육·학예에 관한 입법예고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교육·학예에 관한 입법예고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2항 중 “당해”를 “해당”으로 한다.

제2조(「서울특별시교육감 소관 물품관리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교육감 소관 물품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8조제2항 중 “기타의”를 “그 밖의”로 한다.

제3조(「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·운영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·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6항 전단 및 후단과 제15조 본문 중 “당해”를 각각 “해당”으로 한다.

제10조제7항제4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의”로 한다.

제4조(「서울특별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16호 및 제7조제7호와 같은 조 제14호 중 “당해”를 각각 “해당”으로 한다.

제5조(「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

한다.

제32조제2항 중 “명기하여야”를 “명확하게 기록하여야”로 한다.

제6조(「서울특별시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제2항 중 “경우에는 부의 받은 날로부터”를 “날부터”로 한다.

제7조(「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1호 중 “당해”를 “해당”으로 한다.

제8조(「서울특별시교육청 도농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교육청 도농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5호 중 “감안”을 “고려”로 한다.

제9조(「서울특별시교육청 독도교육 강화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교육청 독도교육 강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본문 중 “명기하는”을 “분명하게 기록하는”으로 한다.

제10조(「서울특별시교육청 디지털 리터러시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교육청 디지털 리터러시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1항제3호 중 “기타의”를 “그 밖의”로 한다.

제11조(「서울특별시교육청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교육청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

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2항 중 “당해”를 “해당”으로 한다.

제12조(「서울특별시교육청 정책자문위원회 설치·운영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교육청 정책자문위원회 설치·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2항제4호 및 제8조제2항제3호 중 “기타”를 각각 “그 밖에”로 한다.

제8조제4항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의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